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26

발의연월일: 2024. 11. 20.

발 의 자: 박해철 • 박지원 • 박홍배

김 윤 · 정동영 · 강준현

김 현 • 박희승 • 송옥주

정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하는 정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규정으로 상향,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보다 명확히하여 차별적 처우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법률 제 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를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근로자의 유무 및 근로자의 수
-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 3. 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 4.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5.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 호까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생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2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	
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	
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
<u>다</u> . <u>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u>	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u>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한다.	제공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u><신 설></u>	1. 근로자의 유무 및 근로자의
	<u>수</u>
<u><신 설></u>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u><신 설></u>	3. 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u><신 설></u>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u><신 설></u>	5.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
	<u>한 사항</u>
<u> <신 설></u>	<u>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u>
<u><신 설></u>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 시 사 \	<u>사항</u> ㅇ ㄱ 바세 키.벼저 ᅱㅇ이 메사
<u><신 설></u>	8. 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
	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

 터 제7호까지에 포함되지 아

 니하는 사항